

소 장

원 고 O O O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 - OOO)

피 고 △△세무서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 - ○○○)

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〇〇. 〇. 〇.자로 결정 고지한 20〇〇년도 귀속 종합소 득세 〇〇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기초사실

원고는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일반건설업 및 부대사업, 주택건설업,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☆☆종합건설주식회사(이하 회사라고만 한다.)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습니다.

- 2. 종합소득세 부과처분
 - 가. 소외 △○△세무서장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소재 회사에 대한 20○ ○년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 ○○○원을 상여로 처분하였습니 다.

- 나. △○△세무서장은 위 추계소득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며 추계소득금 영화 원고와 소외 이□□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○○. ○. ○. ○. ○. ○. ○. ○. 까지 중 2분의1인 52일과 원고가 단독으로 위 회사 대표이 사로 등재되어 있던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44일을 합한 96일간에 해당하는 ○○○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위 회사에게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습니다.
- 다. △○△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부도로 폐업하자 원고의 주소지 관할인 피고에 게 통보하였습니다.
- 라. 피고는 △○△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○○. ○. ○. 20○○년귀속 종합소득세 ○○○원을 원고에게 결정고지 하였다가 20○○. ○. ○. △○△ 세무서장이 위 회사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중 원고 귀속 소득금액을 원고가 단독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○○. ○. ○.부터 20○○. ○. ○.까지 44일간에 해당하는 ○○○원으로 변경 통보하자 20○○. ○.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○○○원으로 감액 경정 결정하였습니다.

마.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입니다

3. 관계법령

가. 법인세법 제67조

법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·배당·기타사외유출·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. --- 라고 규정하고 있고,

나. 같은 법 시행령 제106호

법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

- 1.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·배당·기타사외유출로 한다. 다만,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(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 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,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.)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.
 - (가) 귀속자가 출자자(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)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.

- www.klac.or.kir
- (나)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호 보다.
- (다)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 출로 한다.
- (라)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 소득

4. 처분의 부당성

- 가.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부터 20〇〇. 〇. 〇. 기간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닙니다.
 - (1) 20○○. ○. ○. 위 회사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소외이□□과 친동생인 이◎◎, 이◇◇의 주식액면가액이○○○원(이□□○○○원 38%, 이◎◎ ○○○원 13%, 이◇◇ ○○○원 6%)으로 총발행주식 ○○○주 대비 57%를 보유하고 있고, 원고는 위 회사의 주식을 한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- (2) 20○○. ○. ○. 소외 정□□과 위 이□□간에 작성된 회사운영에 관한 주 주합의서에는
 - ¬. 위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관리 및 직인, 인감증명발급, 통 장개설, 사용인감의 사용은 정□□이 하고,
 - □ 공사수주업무는 정□□이 하되 공사를 수주하여 토목부분은 정□□이, 건축부분은 이□□이 책임을 지고 시행하기로 하며, 여기에서 소요되는 공사경비는 각자 부담하고 회사관리비는 회사에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정산처리하고,
 - □□이 책임지기로 하며,
 - 리. 위 회사의 주식중 50%를 정□□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를 하였습니다.
 - (3) 한편 위 회사(대표이사 원고)와 위 정□□, 소외 이□□, 양□□, 이◎◎은 20○○. ○. ○.경
 - □□□□ 경영한 ○○도 ○○ 사무실에서 근무한 모든 임직원의 체불된 된 급료, 관리비등 발생한 모든 체불대금은 이□□인묵이 책임지기로 하며,
 - □□□□이 발생한 20○○. ○. ○.자 당좌수표 ○○○원, 같은 달 6일
 자 당좌수표 ○○○원, 같은 달 7일자 당좌수표 ○○○원, 같은 달
 12일자 당좌수표 ○○○원을 정□□이 결재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주

식 50%의 주주인 이□□(27%), 이◎◎(10%) 및 양□□(13%)의 을 20○○. ○. ○.까지 정□□에게 양도하고,

- □ . 위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및 모든 현장들의 관리 및 공사대금 수령은 전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하기로 하고, 공사비를 수령후 그 공사비로 이□□이 발행한 어음을 결재하기로 하며.
- □ □□□명의로 당좌 개설된 도장은 20○○. ○. ○.부터 정□□이 보관하며 어음이 전부 결재된 후에는 이□□에게 돌려주고,
- □. 회사가 정상화되었을 경우 이□□은 정□□이 투자한 금액 전부와 이
 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정□□에게 변제한 후 이□□은 회사
 의 모든 운영권을 다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.
- (4) 위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, 합의각서에 보듯이 원고는 위 회사의 주 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

나. 위 회사의 운영권

- (1) 위 회사는 앞서 본바와 같이 이□□과 그의 형제들이 회사주식 중 57%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 이□□이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. (공사계 약, 당좌발행, 회사의 관리 등 모든 제반업무)
- (2) 위 회사의 이사들인 김□□, 이□□외 4 등도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서 업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.
- (3) 위 회사에 운영에 관한 주주합의, 합의를 하였던 정□□은 자신이 원고에게 부탁을 하여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운영 전반에 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- 다. 결국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자로서 명의만을 빌려주었고,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,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면서 20〇〇. 〇. 〇.부터 20〇〇. 〇. 〇.까지 44일간에 해당하는 〇〇〇원을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〇〇〇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.
- 5.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6. 처분을 안날

2000.0.0.

이의신청일

2000. 8. 30.

이의신청결정

2000. 11. 28.

심사청구일

2000. 1. 16.

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

2000.3.13

심판청구일

2000. 5. 6.



입 증 자 료

1. 갑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

1. 갑제2호증 제적등본

(또는,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)

1. 갑제3호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

1. 갑제4호증 회사운영에 관한 주주합의서

1. 갑제5호증 합의각서

1. 갑제6호증 내용증명

1. 갑제7호증의 1내지7 각 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소장부본 1부

1. 입증자료 각 1부

1. 납부서 1부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 ㅇ ㅇ (인)

○ ○ 행정법원 귀중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제9조 ~ 제34조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제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 법원임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제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